

국민행복 카드 신청	BC카드	IBK기업은행, NH농협, SC제일은행, 경남은행, 광주은행, 대구은행, 부산은행, 수협은행, 우리은행, 전북은행, 제주은행, 우체국
국민행복 카드 발급사	삼성카드	삼성카드 전국 영업점 및 신세계·세이 백화점
	롯데카드	롯데카드 전국 영업점 및 롯데백화점
카드발급 문의	BC카드	콜센터(1899-4651) 또는 각 국민행복카드 발급 은행 콜센터
	삼성카드	콜센터(1566-3336)
	롯데카드	콜센터(1899-4282)
제도 문의	보건복지	콜센터(국번없이 129)
	사회보장 정보원	콜센터(1566-3232, 단축번호 4번)

바우처 사용 가능 구매처

국민행복 카드사	구매처	
	온라인	오프라인
BC카드	우체국쇼핑몰 G마켓, 옥션	나들가게 (전국 170여 개 지정점) 이마트, 노브랜드, PK마켓* <small>*스타필드 하남·위례·고양, PK PEACOCK 대치역점</small>
삼성카드	삼성카드 쇼핑몰	이마트
롯데카드	롯데 올마이쇼핑몰	롯데마트

- 이마트 에브리데이 및 롯데슈퍼 사용 불가
- 가까운 나들가게 지정점 현황은 나들가게 홈페이지(www.nadle.kr) ▶ 우리동네 나들가게 ▶ 기저귀·조제분유 바우처 점포에서 확인 가능
- 우체국쇼핑몰 전화주문 가능(1588-1300)
전화주문 이용시간 : 평일 오전 9시~오후 6시, 토요일 오전 9시~오후 1시 (일요일·공휴일 휴무)



핸드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여
자세한 정보를 알아보세요.

보건복지콜센터(국번없이 129),
관할 보건소로 문의주세요



2020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

만 2세 미만 영아가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
기저귀·조제분유 구매비용을 지원해드립니다.

기저귀 0~24개월 미만 영아

- 1 기초생활보장 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* 자격보유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 지원
- *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 가구



- 2 기준중위소득 80% 이하 장애인, 기준중위소득 80% 이하 다자녀(2인 이상)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* 지원
- * 다자녀 가구의 경우 둘째아 출생 당시 첫째아가 24개월 미만인 경우 첫째아도 지원 가능

2020년 기준중위소득 80% 판정기준 (단위 원)

가구원 수	기준 중위 소득 (80%)	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		
		직장가입자	지역가입자	혼합
2인	2,394,000	79,924	45,003	80,076
3인	3,096,000	104,090	95,023	105,268
4인	3,799,000	126,909	118,159	128,407
5인	4,502,000	151,927	150,605	153,994
6인	5,205,000	174,636	178,276	177,425

*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



조제분유 기저귀 지원대상 중

- 1 산모가 사망·질병*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
 - * 질병 : 에이즈, HTLV 감염, 악성신생물, 방사선·항암제 치료 등
- 2 아동복지시설·공동생활가정·가정위탁보호·입양대상 아동, 한부모(부자·조손*)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
 - *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내지 제5조의2에 따른 부자 또는 조손가정에 한함
- 3 산모의 의식불명, 장기간(4주 이상) 입원, 유선손상 등 의사가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



기저귀
월 64,000원



조제분유
월 86,000원

*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
** 카드사별 사용이 가능한 구매처에서 직접 물품을 구매

1 신청기간



영아 출생 후



만 24개월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

← 신청기간 →

* 단, 출생일로부터 60일(출생일 포함) 되는 날까지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, 60일을 초과할 경우 만 24개월까지 남은 기간에 한해 월 단위로 지원

신청장소



읍·면·동 주민센터



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



복지로 사이트
www.bokjiro.go.kr

* 신청장소와 관계없이 최종 지원대상 판정 결과는 관할 보건소에서 개별 통지

신청자 제출(공통)

- 1 사회보장급여(사회서비스이용권) 신청서 1부
-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
- 3 주민등록등본 1부*
 - *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

해당자 제출(추가)

기준중위소득 80% 이하 장애인·다자녀 가구

- 공 통- 신청일 기준 직전 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
 - *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
 - ** 건강보험료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(관할 보건소 문의)

다자녀- 가족관계증명서 1부*

* 주민등록등본상 다자녀 확인이 어려운 경우

조제분유 신청

산모의 질병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의사 진단서(소견서) 혹은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, 시설아동증빙서류 등 1부

등분상 가족관계 입증에 곤란한 경우

가족관계 증명서 1부

부모 외 신청

영아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*

* 가정위탁보호확인서, 시설아동증빙서류, 후견인 증명서 등

국민행복카드 미보유자

상담전화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

* 기타 필요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, 일반장애인등록증 등 지원자격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

